

1. 개정이유

어선의 승선원 변동시 방문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하므로 원거리에 위치한
파출소 이용으로 어업인 불편 및 신고 기피를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
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를 인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승선원 변동시 모바일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전자 출입항 신고 인정하도록
정함(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양경찰청과 합의 완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해양수산부 제 호

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류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~ 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출입항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류로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.</u>